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2017. 9. 22.>

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
	주소(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)	전화번호

면허(협의·승인) 연월일 및 면허번호	
매립장소	
매립면적	㎡
매립목적	
효력상실 연월일	년 월 일
효력상실 원인	
공사 기성 공정(율)	%
총공사비	천원
신청 사유	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3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장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매립면허관청)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예정 공정표 3. 매립공사의 공정이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※ 이 별지에서 "매립면허관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	수수료 없음
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접 수	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	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	면허회복 또는 반려 처분	통 보
신청인	매립면허관청	매립면허관청	매립면허관청	매립면허관청	매립면허관청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